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0. 19(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0. 13(제177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검토보고: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O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여성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에 대한 상근(겸직금지)규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3호)
- O 여성문화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상근 (겸직금지) 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 함(안 제21조제2항)
- O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규정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에 여성창업 지원육성을 위한 운영근거 마련과, 여성인력개발 센터 직원에 대한 상근(겸직금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2009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임.

□ 주요내용

- 안 제4조 및 제7조제3호에서는 여성복지관의 사업중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
- O 안제19조는「모부자복지법」이「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07.10.17) 되어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함.
- **안 제21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장 및 직원의 **상근과 겸직금지** 규정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삭제¹⁾함.**

[법제처 해석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음.

-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총 5명 이상을 규정한**바, <u>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 근무 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u> 따라서 <u>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u>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된다.
- ⇒ <u>겸직금지를 규정</u>하는 것은 <mark>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여성발전기본법』</mark> 에서 조례로 위임 한 바 없으므로, <u>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u> 제 22조2)의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별표2】는 여성복지관의 여성창업지원센터 사업 추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139조³⁾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¹⁾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09-0156) 2009. 6. 26

²⁾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³⁾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u>사용료・</u>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u>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u> <u>례로 정한다.</u>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u>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1.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지역 특화 및 여성 친화적 직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예비 창업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적은 비용으로 창업지원센터 제공 및 각종 지원

□ 사업개요

○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009. 8월 ~

○ 입주대상 : 인천 거주 여성 중 1개월 이내 창업예정자 또는 창업 후 2년 이내자

○ 모집업체: 6개소 (창업지원실 4개소, 창업부스 2개소)

O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46-1 여성복지관 3층, 4층

○ 분 야 : 창업지원실 - 비제조업 및 서비스업, IT·컨텐츠 분야 등 창업

부스 - 양장, 한복, 홈패션 등

O 입주조건(부담금)

구분	입주기간	연장 (기간)	보증금(퇴소시환불) / 월 사용료	입주자부담	비 고 (지원사항)
창업지원실 (4개소)	1년	1회(6월)	100만원/5만원	전기요금,전화(가입·요금), 통신료,컴퓨터 등 장비일체, 사무용품, 종량제봉투 등	사무실공간, 냉난방기
창업부스 (2개소)	6월	1회(6월)	50만원/2만원	"	"

O 지원 사항

-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성공 창업 유도
- 각종 홍보 지원 및 복지관 물품 구입 시 우선 구입 등 혜택 부여

□ 공개모집 및 운영:

○ 총 6개업체 입주 및 운영

- 창업지원실(4개소): 인터넷쇼핑몰(양말, 쥬얼리, 친환경시계) 3개소,

인테리어 1개소

- 창업부스(2개소) : 양장 1개소, 한복 1개소

2. 사용료산출내역

○ 사용료

- 창업지원실 : 보증금 100만원/ 월 5만원

- 창 업 부스 : 보증금 50만원/ 월 2만원

※ 전기요금 별도 (계량기설치부과) / 종량제봉투사용

구분		입주기간 (연장)		보증금/ 월사용	· - - - - - - - - - - - - - - - - - - -	월사용료 내역	지원	입주제한
		창업지원실 부스		창업지원실 부스		भान		
	본관	1년 1회(6월)	6월 1회(6월)	100/5 (7.5평)	50/2 (3평)	점용료,관리비 등 *전기요금별도 *종량제봉투사용	냉난방기 등	국세미납
인천	여성의광장	1년 1회(1년)		30/7 (7.5평)		점용료,관리비 등 (전기요금포함)	냉난방기, 컴퓨터, 책상 등	국세미납
	여경협	1년 1회(1년)		/30 (10평)		и	и	국세미납
	여성능력 개발원	1년 1회(6월)	6월 1회(6월)	100/7 (7.5평)	50/1 (3평)	и	ш	국세미납 신용불량
서울	북부여성 발전센타	1년 1회(6월)	매대-3월 1회(3월)	100/2 (7.5평)	20/1 (3.7평)	и	ш	국세미납
	서부여성 발전센타		6월 1회(6월)	50/6 (7.5평)		и	и	국세미납 *매대예 정
북부여	경기 성비젼센타	1년 2회(1년)	1년 2회(1년)	50/7 (7.5평)	20/1 (1.5평)	и	ш	국세미납 신용불량
	(카톨릭대) 보육센터	3년 1(2년)		360/45 (18평)	180/23 (9평)	и	u	국세미납 신용불량

○ 산출내역 (타 창업지원센터 책정 금액에 준하여 산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흥철, 이병화, 정종섭, 최병덕 위원

나. 반대 : 없 음

6. 심사결과

O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취업지원과"를 "교육·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 센터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 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 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겸직금지)으로 하고"를 "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2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창업	창업지원실	1개월	50,000	보증금 100만원 별도전기료 등 별도
지원센터	창업부스	1개월	20,000	보증금 50만원 별도전기료 등 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생략)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여성복지관 : 여성의 능력개발을	1
위한 <u>교육·취업지원과</u> 저소득 여성	<u>교육·취업지원</u> , 여성창업지원
의 자활 능력지원, 여성과 아동의	센터 운영,
상담·보호, 자원활동 지원 등 여성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여성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제7조(사업)
사업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
	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
	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6. (생략)	4.~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생략)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
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	
강료와 유아수탁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와 저소	
득 <u>모·부자 가정</u>	한부모가족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현	 행		7	'H >	정	안		
제21조(조직 구성) ①	(생략)	제213	조(조직	구성)	1)(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시설의 장</u>	2					시설의	장
및 직원은 상근(겸직	금지)으로 하고	<u>과</u>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	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현	행			7	ዝ ፡	정 약	<u>}</u>	
[별표 2] 여성복지관 기준표	시설 사용	·료 및	교육수강료	[별표 2] 여성복지 기준표		시설 스	P용료 및	및 교육수강료	
			(단위:원)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금	비고						
1. 시설사용료 가. 대강당 나. 회와실세미나실	1회(1시간) 1회(1시간)	30,000 15,000	- 매시간 초과시 마다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1 가 나					
2. 냉 · 난방 가. 대강당 나. 화일세마나실	1회(1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 마다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2 가 나					
3. 유아수탁료 (교육생)	1개월	15,000		3					
	1개월 (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 - 		
4. 교육수강료	1개월 (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이하)	15,000			4			- - 	
	1개월 (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이상)	20,000					- - 		
			<신 설>	<u>5. 창업</u>	<u>창업</u> 지원실	1개월	50,000	- 보증금 100만원 별도 - 전기료 등 별도	
				지원센터	<u>창업</u> 부스	1개월	20,000	- 보증금 50만원 <u>별도</u> - 전기료 등 별도	